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49~49p	해설	<p style="text-align: right;">기출이 답이다 11월과목특강</p> <p>11 [3][3] 판공 정답 ③</p> <p>㉔ 사례</p> <p>다(사) 법조협회 임의사외 법원은 변호사 법원의 특격이나 계속적인 불법의 정도가 상당하여 인정되는 경우 이(사) 자기의 형위로 인하여 본인 또는 사장의 고교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임박할 인하여거나 예외로 인한 경우 그 인사는 법원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법행위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때에도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에 관여하여 이(사)의 고교 또는 위험이 임박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병행 상사 살인의 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병행에 이르게 한 행위, 병행의 동기, 본래의 동기, 행위, 동요, 동기의 위법성, 사형의 고교행위가 병행 고교, 병행 고교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병행 고교의 고교인 사형의 고교행위에 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2008.9.10. 2008.도2231).</p> <p>㉕(사) 부(사) 고교 행위를 위하여 ㉔, ㉕ 중을 고교행위시 그중에서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 부(사)는 살인죄를 범행 목적 또는 살인의 본질에 관한 고교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 판례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9.10. 2008.도2231).</p> <p>㉖(사) 형(사) 2015.9.10. 2015.도2599</p> <p>㉗(사) 형(사) 2015.9.10. 2015.도2599</p> <p>㉘(사) 형(사) 2015.9.10. 2015.도2599</p> <p>12 [3][3] 판공 정답 ①</p> <p>㉔ 사례</p> <p>㉕(사) 형(사) 2003.11. 2003.도715</p> <p>㉔ 사례</p> <p>㉕(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㉖(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㉗(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㉘(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㉙(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㉚(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㉛(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㉜(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㉝(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㉞(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㉟(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㊱(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㊲(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㊳(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㊴(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㊵(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㊶(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㊷(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㊸(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㊹(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㊺(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㊻(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㊼(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㊽(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㊾(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㊿(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2018년 3차 경찰공무원시험 49</p>	<p>④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처) 을과 혼외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합).</p>
문제편 60~60p	문제-분문	<p>14 [3][3] 판공 정답 ①</p> <p>㉔ 사례</p> <p>㉕(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㉖(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㉗(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㉘(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㉙(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㉚(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㉛(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㉜(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㉝(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㉞(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㉟(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㊱(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㊲(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㊳(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㊴(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㊵(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㊶(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㊷(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㊸(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㊹(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㊺(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㊻(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㊼(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㊽(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㊾(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㊿(사) 형(사) 2018.12.13. 2018.도1444</p> <p>2018년 3차 경찰공무원시험 60</p>	<p>③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p>

